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 및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민간 참여 확대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570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기본계획 재검토 의무화 등	4
2.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민간 참여 확대 등	18
3. 실태조사 의무화 및 시민참여 모니터링 근거 마련	26
4. 해양폐기물 관리센터 업무 및 관리센터 지정 근거 규정	33
[참고자료]	4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23.
3. 회 부 일 : 2026.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국지적인 오염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조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가 부족하고,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어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 재검토 의무화 등(안 제5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안 제5조제1항),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발생 예측 및 감축 등 해양폐기물 전주기 대응에 관한 사항’ 및 ‘해양폐기물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

현행	개정안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8. (생략) ③ ~ ⑤ (생략)	----- ----- ----- ----- ----- ----- ----- -----5년마다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u>기후위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발생 예측 및 감축 등 해양폐기물 전주기 대응에 관한 사항</u> 9. <u>해양폐기물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사항</u>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1)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 등 변경 의무화

- 현행법 제5조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양환경이나 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²⁾.

그러나 현행법의 재검토 및 계획변경 규정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재검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³⁾에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7.9.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거나, 실태조사⁴⁾ 결과 해역·수역 별 해양폐기물의 분포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견되는 등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도 정부의 계획 변경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개정안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해양오염 현안에 대응하여 능동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수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수도법」은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 및 계획 변경을 모두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와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경우 타당성 재검토는 의무규정이나 기본계획 변경은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실태조사)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련 입법례 >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 및 계획 변경을 모두 의무로 규정할 경우 당초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주기를 “10년”으로 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점, 타당성 검토 결과 경미한 상황 변동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 계획

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합리적인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5조제1항 본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⁵⁾, 개정안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협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므로⁶⁾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5조제1항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시행계획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을 주체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해역관리청(영해는 시·도지사,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수부장관)⁷⁾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현행 시행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검토 후 시행계획 변경의무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와 재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같다.

8. “**해역관리청**”이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및 항만 안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

2) 기본계획에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포함 규정

□ 최근 수십 년간 전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4도 상승하였고⁸⁾, 이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대형 산불, 가뭄 등의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후위기 적응’, 그리고 근본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의 이행과 실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이들 개념을 국가 정책에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정책, 예산, 제도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⁹⁾

□ 현행법 제5조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정화(제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제4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복원 및 사후관리(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적응이나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¹⁰⁾

8) 세계기상기구(WMO)는 2025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43도(± 0.13 도) 상승했다고 발표하였음. (WMO,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5」, 2026.3.23.)

9) 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Ⅲ,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2025.9.23., p.150.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기후변화는 집중호우 및 홍수 빈도를 증가시켜 육상의 쓰레기와 하천 주변 폐기물의 바다 유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해양폐기물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¹¹⁾, 해양생태계는 육상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빠르고 탄소저장 효과가 큰 탄소흡수원이라는 점¹²⁾에서, 현행법에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발생 예측 및 감축 등 해양폐기물 전주기 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2항제8호)’ 및 ‘해양폐기물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2항제9호)’을 규정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주요 과제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하천·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UNEP, From Pollution to Solution: A global assessment of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 2021.10.21.; 관계부처 합동,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20216.30.

1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블루카본으로 해양의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2023.5.31.

첫째, 안 제5조제2항제8호는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기후변화”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³⁾

개정안에 따른 “해양폐기물 발생 예측 및 감축” 등의 사항은 기온·강수량·해류 등 과학적 데이터의 변동성을 분석·대응하는 영역이라는 점, “기후위기”는 “기후변화”(원인)의 지속에 따라 도달하는 정치·사회적 상황(결과)이라는 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하여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신설안은 기존 조항들과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수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현황조사 및 수거·처리(제2호), 해양 유입 방지(제3호), 발생 예방 및 저감(제4호), 개선 및 복원(제5호) 등 해양폐기물과 관련한 단계별 관리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의 “해양폐기물 발생 예측 및 감축 등 전주기 대응(안 제5조제2항제8호)” 또는 “해양폐기물 저감(안 제5조제2항제9호)” 등과 일부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사, 수거, 저감, 복원 등 대응 절차가 각 호로 분절되어 있으므로, 해양폐기물 관련 대응 전주기에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설되는 규정이 기존 항목들을 총괄·포섭할 수 있도록 문구를 일부 수정하되,

신설 항목 모두 “기후변화”라는 동일한 요인에서 파생된 대책이므로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전주기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사항” 등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5조제2항제8호는 “전주기”라는 표현은 한자를 병기(전주기, 全週期)하여 그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전주기’는 제품이나 물질의 ‘원료 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 주기(Life Cycle)를 뜻하는 산업·의학분야의 전문용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최근에는 어떤 정책의 모든 과정 또는 단계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바¹⁴⁾, 한글로만 표기할 경우 ‘전체 기간(全期間)’이나 ‘모든 기한’ 등의 일반적인 시간적 개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이클(Cycle)의 의미를 담은 ‘주기(週期)’를 한자로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해양수산부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후변화대응 또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입법례 >

구분	조문	내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포함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 영향 등 평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5년마다 조사·평가, 공표하도록 규정

14)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6조(디지털 기반 업무수행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사용·평가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 각 단계가 상호 연속적이고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 물관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분	조문	내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이상기후·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 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 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 공표 하도록 규정
「산림기본법」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 평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 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 공표하도록 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등에 취 약한 생태계 조사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 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 술개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 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 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물관리기본법」	제18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 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의 수립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 리 취약성 대응방안 포함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 의 수립)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포함하도록 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 본전략)	정부로 하여금 국가기본전략에 기후위기 대 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 기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 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 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시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 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구분	조문	내용
		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가유산기본법」	제22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025.7.29. p.69. 참고하여 재작성

2.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민간 참여 확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하고(안 제5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5조의2제6항·제8항),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방위원회” 및 동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사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7항·제9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단서 신설>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현행	개정안
1. 2. (생략) ④ . ⑤ (생략) ⑥ <u>위원회의</u>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⑦ <u>위원회의</u> 구성·운영 및 심의 방법, <u>실무위원회</u>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u>과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u> ----- -----. ⑦ <u>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⑧ <u>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u> -----<u>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u> -----. ⑨ <u>제7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방법,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1) 민간위원 참여 확대

□ 현행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함), 그리고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함)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⁵⁾

동 법 시행령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해양수산부장관 외에 해양폐기물 문제와 관련도가 높은 9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3개 공공기관의 장 등 13명, 민간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⁶⁾

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 「어촌·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요 >

- **(근 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
- **(목 적)**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안건과 대책을 관련 부처, 공공기관 및 전문가 참여하여 심의.조정하고 상호 협력
- **(구 성)** 위원장(해양수산부장관)과 9개 부처 차관, 3개 공공기관장(이상 당연직 위원) 및 10명 이내 전문가 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위원: 부처)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당연직위: 공공기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 (민간위원)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는 10명 이내로 구성
- * 국제협력^{1명}, 자원순환^{1명}, (미세)플라스틱^{2명}, 육상폐기물 관리^{2명}, 해양폐기물 관리^{2명}, 시민협력^{1명}, 기관협력.조정^{1명}
- **(안 건)**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중앙과 지방의 갈등 조정, 법령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대응 등

개정안은 공무원·공공기관 중심의 당연직 위원의 비중 보다 민간위원의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높이려는 것으로, 해양폐기물 관련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 현안과 관련된 학계와 시민사회의 전문적 시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양수산부는 위원회 내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확대하여 민간 의견 수렴을 활성화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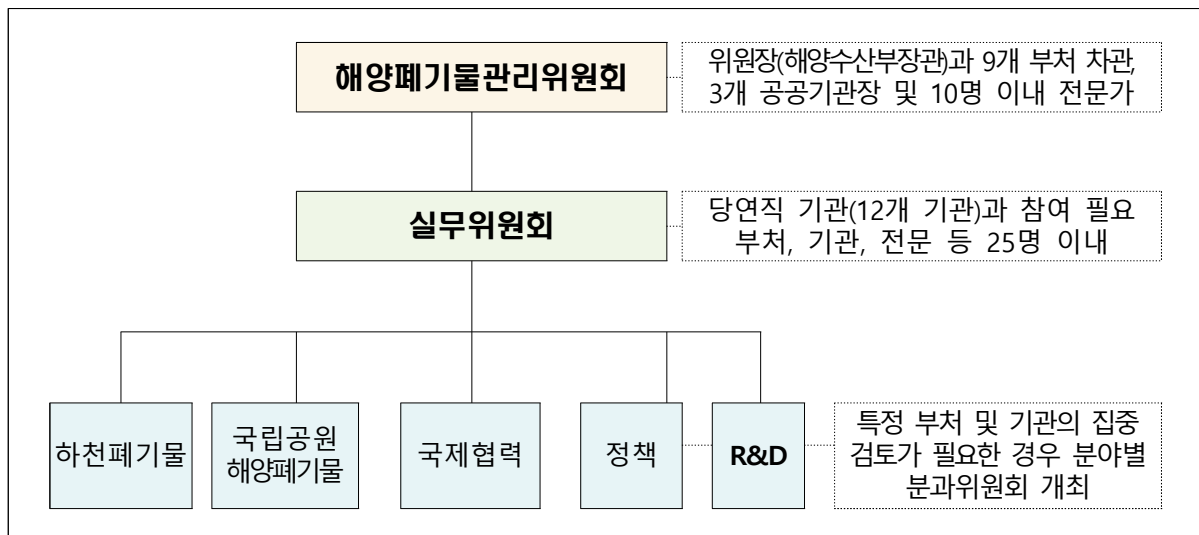
2)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현행법 제5조의2제6항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¹⁷⁾,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음.¹⁸⁾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는 실무위원회 아래에 하천폐기물, 국제협력, R&D 등 특정 부처 및 기관의 집중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분

1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과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법상 직접적인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¹⁹⁾

개정안은 이러한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5조의2제6항은 실무위원회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은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해당 조항에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관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실무위원회가 총괄·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분과위원회를 실무위원회와는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등 양자의 업무 범위 및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⁰⁾

□ 해양수산부는 현재 이미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0) 현재 해양수산부는 실무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 구조임.

3) 시·도에 지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이며(제5조제1항),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의 주체(제11조)인 동시에,

해역관리청으로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제5조),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제6조), 부유 폐기물 및 침적폐기물 수거(제13조·제14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제16조) 등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 수행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이나 관계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개정안은 시·도에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와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현장 적합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위원회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²¹⁾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경우 안 제5조의2제7항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자

21) “조정”은 개인이나 단체 간에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나 입장을 조정·중재하여 합의(合意)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함. 현행법 상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제2항제2호)”을 소관으로 하므로 “심의·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문”²²⁾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중앙에 설치된 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동일하게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서도 그 기능을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양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차이를 둘 경우 그 취지와 기준이 개정안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5조의2제8항은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방법,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방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은 해당 시·도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치입법에 맡기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와 산하 분과·실무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22) 심의기관인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심의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적 절차라는 특징이 있음.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임. 두 위원회 모두 심의결과 또는 자문 결과가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짐(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3. 실태조사 의무화 및 시민참여 모니터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재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역관리청의 해양오염 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실시 목적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 파악 및 감축 등 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를 추가하며(안 제6조제1항)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 ----- -----매년 하 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 파악 및 감축 등 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생략)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이하 이 조에서 “민간단체등”이라 한다)가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등이 실태조사 또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1) 실태조사 의무화 등

□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 등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²³⁾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실태조사)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급증함에 따라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과 경로가 매년 급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의적 실태조사로는 정확한 해양폐기물 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²⁴⁾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는 이미 발생한 해양폐기물의 분포 현황, 수거·처분 및 정화에 국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²⁵⁾, 해양폐기물 발생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목적에 발생 원인 파악 등을 위한 기초조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양폐

24)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이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1065-301)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 및 주요 오염원, 지역적 분포 등 변화 추세 파악을 위하여 서해권, 서남해권, 남해권, 동해권 등 4개권역 중 1년에 1개 권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참고자료 참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영해 및 연한 해역관리청인 시·도가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2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가. 해역·수역별 분포 현황 및 현존량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다. 수거 및 처분 방법

2. 해양오염퇴적물

가. 해역·수역별 분포 현황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다. 정화가 필요한 구역의 범위 및 정화 대상 해양오염퇴적물의 물량

라. 정화 방법

마. 정화를 거친 퇴적물의 최종 처분 방법

기물 관련 데이터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해양폐기물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교하고 사전 예방적 대책 수립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만, 현행법상 실태조사의 주체는 해역관리청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반면 영해 및 연안 해역은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인력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 제29조제1항제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²⁶⁾, 재량규정이므로 지원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관련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음.²⁷⁾

□ 해양수산부는 매년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평가가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

2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7) 현행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의 해양유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동 조항에 따른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련 개정안[「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대표발의, 2211667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2202000)]이 발의되어 2026.4.23. 국회를 통과하였음(2026.11.13. 시행예정)

2) 민간 참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현행법상 실태조사의 주체는 해역관리청으로, 실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양환경공단 등 전문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고, 순수 민간단체나 지역 주민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기후위기 등으로 해양폐기물 유입 경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해역관리청과 공공기관의 조사만으로는 광범위한 해역에 걸쳐있는 해양폐기물 등을 적시에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해당 해역을 잘 아는 전문가나 지역·민간단체 등이 실태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안 제6조제1항²⁸⁾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사 인력 등 부족 문제를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은 민간 참여 및 예산 지원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²⁹⁾ 현행법상 실태조사의 주체가 시·도

28) 안 제6조(실태조사 등)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29) 안 제6조(실태조사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단체등”이라 한다)가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사를 포함한 “해역관리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도 실태조사에 민간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입법 취지는 정부가 특정 시점과 주기를 정해놓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하여 상시적·지속적으로 상황 변화를 관찰·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참여 근거가 마련될 경우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수정하여, 중복되는 표현을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리하고³⁰⁾, 민간단체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등이 실태조사 또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여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의 의미가 모호하고 해석상 실태조사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4. 해양폐기물 관리센터 업무 및 관리센터 지정 근거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복수로 관리센터로 지정·지원 및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u>관리센터</u>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 ----- ----- -----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u> 2. <u>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관리</u> 3. <u>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지정한 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정 외에----- ----- -----.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행 업무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³¹⁾

이에 따라 해양환경공단 하에 관리센터가 설치³²⁾되어 해양폐기물 수거 및 실태조사, 해양폐기물 관련 연구·정책 제언, 국민 참여·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³³⁾

개정안은 현행법상 설치·운영 조항만 존재하던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를 도입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책임

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관리센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2) 해양수산부는 관리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현행법 제33조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체 위탁 중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3) 구체적인 업무는 참고 2 「해양폐기물관리센터 개요」 참조

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특히 그간 해양환경공단이 단독으로 위탁 수행하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업무를 역량있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게 개방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외부의 기관·법인·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이는 현행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치·운영” 규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관리센터의 법적 성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관리센터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모호해지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현행법의 취지와도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관리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방식 중 어느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센터의 업무 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된 조사·연구(제1호), 정보의 수집 및 통합관리(제2호)는 현행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³⁴⁾의 업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상 관리센터는 대국민 홍보, 국제협력, 민간참여 활성화 등 더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일 조직이라는 점에서 복수 지정이 가능한 전문기관과는 차별화되어 왔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관리센터가 외부 기관에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경우 전문기관과의 구조적·기능적 차별성이 더욱 축소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양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전문기관과 관리센터 비교 >

구분	전문기관	관리센터
법적근거	현행법 제25조	개정안 제27조
주요 업무	-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 -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및 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 적물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3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 등의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검사·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주는 행위
2.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하는 행위

④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로 본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구분	전문기관	관리센터
	<u>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u> - <u>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u> <u>·부피 등의 측정</u>	- <u>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u>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 - 관계부처 요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자문 제공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등의 자문 및 의견 수렴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셋째, 개정안에 따라 복수의 관리센터가 지정·운영될 경우 기존 센터가 축적해 온 전문성의 단절을 막고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정보 통합 관리 등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컨트롤타워 기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수 지정 체계 하에서도 해양폐기물 정책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센터 간 총괄·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은 관리센터 지정(안 제27조제3항) 및 지정취소(안 제27조제5항)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므로, 지정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적 규정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관리센터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이나 지정절차, 부실 운영 적발을 위한 출입검사³⁵⁾ 및 지정취소 전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문 규정³⁶⁾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은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행정제재(지정취소·업무정지)와 형사처벌(벌칙)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³⁷⁾, 개정안은 관리센터에 대해서 행정제재만을 규

3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2조(출입·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 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보관·처리 현황을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6) 현행법 제31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37)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조사업무를 한 경우
5.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6. 제2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관리센터 역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감안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개정안 제27조제2항제7호와 제5항제4호의 경우 관리센터의 업무와 지정취소 요건을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 조항만으로는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을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지정취소 요건(안 제27조제5항제4호)의 경우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관리센터 수행 업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 설치된 관리센터 외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환경교육법」, 「장애인보조기기법」 등의 유사 입법례 등을 볼 때 다수의 관리센터를 운영 시 설치하는 권한과 지정하는 권한을 동시에 규정한 사례가 없으며, 센터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관리센터는 단순 수행기관이 아닌 국가 정책집행 인프라로

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지속성·공공성·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도 연구용역·위탁사업 등을 통해 전문기관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기 설치된 하나의 관리센터외에 별도의 지정 범위 확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⁸⁾

문 의 처

02)6788-5422

38)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 추진 배경

-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폐기물을 과학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 AI 등을 활용한 전국 해안가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추진

□ 주요 내용

- (개요) 5개년에 걸쳐 전국 해안가의 해양폐기물을 실태조사하고 우심해안을 도출 및 해양폐기물 수거·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추진

- (현장조사) 전국 해안가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드론 등으로 해양폐기물을 실태조사하고 AI를 활용하여 종류, 무게 등을 분석

* 총 해안선(8,174km) 중 조사가 가능한 해안선(3,290km)을 도출하여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1년마다 1개 권역을 조사하여 5년간 실태조사 실시

** (1차) 인천·경기·충남 / (2차) 전북·전남북부 / (3차) 전남서부·전남남부(다도해권) / (4차) 전남동부·경남일부(한려해상권) / (5차) 경남잔여·강원·제주 등

- (우심해안 관리) 해양폐기물 주요 밀집 구역(Hot-spot)을 파악하고 위해도를 평가*하여 해양폐기물 우심해안을 도출 및 집중 관리

* 해양생태계의 해양폐기물 취약성, 해양폐기물 노출 정도 등에 따라 5등급(관심-주의-경계-위험-매우위험)으로 구분하여 평가

- (모니터링) 전국 해안가 정점*(32개)에 대해 4회(5·7·9·11월)에 걸쳐 해안가 폐기물을 인력이 직접 조사하여 국가별 비중**, 종류, 분포 현황 등 파악

* 외국기인 및 전체 해안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대표성이 높은 정점 위주로 선정

** 중국 등 주변국 기인 및 국내 해양폐기물의 발생 현황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 기초자료의 생산·활용

- (방법) 100m 해변을 소구간 20개(5m)로 나누고, 4개의 소구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1개 정점의 조사 범위를 20m로 설정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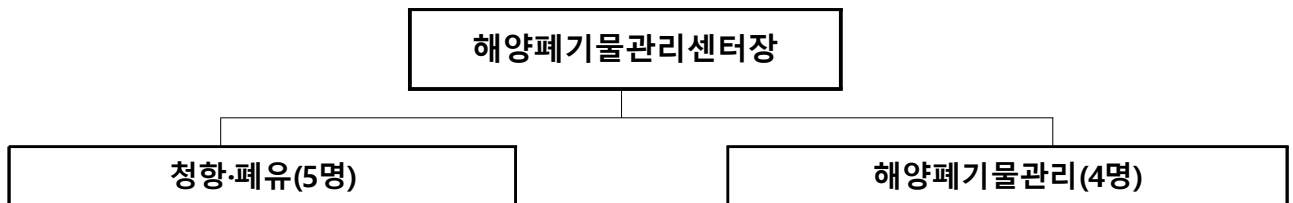
해양폐기물관리센터 개요

□ 개요

- (법적근거) 해양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2조
- (운영목적) 해양폐기물과 관련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 발생 저감 및 민간과의 협력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센터 운영

□ 조직 및 운영인력

- 조직도(총 10명, '26.5월 기준)



- 최근 5년간('22~'26) 위탁사업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해양폐기물관리	청항·폐유	14,902	15,984	16,126	16,502	17,114
	인식증진	577	206			-
	실태조사·모니터링	450	450		300	500
	재활용			1,650	600	600
	발생예방				400	400
	반려해변	440	460	56	149	200
	육상 폐기물관련				100	100

□ 추진 현황

- ('11.11월) 해양쓰레기 발생·처리 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전담조직으로 '해양쓰레기대응센터'를 설립
- ('21년 이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정 '19.12, 시행 '20.12)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센터로 명칭 변경

□ 해양폐기물관리센터 주요 업무 현황

-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25년 신규)
 -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폐기물을 과학적,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 드론, AI 등을 활용한 전국 해안가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추진
 - * (1차) 인천·경기·충남 / (2차) 전북·전남북부 / (3차) 전남서부·전남남부(다도해권) / (4차) 전남동부·경남일부(한려해상권) / (5차) 경남잔여·강원·제주 등
 - 해양폐기물 주요 밀집 구역(Hot-spot)을 파악하고 위해도를 평가하여 해양폐기물 우심해안을 도출 및 집중 관리
- 해안폐기물 모니터링 ('08~'23, '26~계속)
 - 전국 주요 32개 정점에 대한 연4회 해안폐기물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조사결과 분석, 정책 제언, 외국기인 폐기물의 발생현황 조사
 - 외국기인 폐기물의 발생 현황 조사(집중분포지역, 계절별 발생량, 주요 발생 형상·분포 등) 및 장기 변동 추세 분석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www.meis.go.kr)에 해양폐기물 수거·조사, 오염퇴적물정화, 국가해안쓰레기, 폐기물 해양배출, 반려해변 등에 대한 데이터 및 시스템 관리
- 어선 발생 생수병(PET) 투기예방, 어민대상 교육·홍보
- 전국 단위의 해양폐기물 재활용 집하장 운영
- 재활용 제품 제작 및 판로지원 등 제품 판매 활성화
- 육상기인 재해쓰레기 해양 유입 대응
- 해양폐기물 저감 인식증진 주요 활동(교육·광고·행사·공모) 등

참고 3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관련 입법례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현황 및 치수(治水) 현황
3. 하천 환경
4. 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 국토기본법 >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국토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3조(유해생물 관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생물의 발생 및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청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

제18조의3(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중앙보조기기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